

『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여, 손해보험 의무가입 및 제출 조항을 삭제하고, 사용료 감면기준을 명시하며, 기준이 모호한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사용료 감면기준을 명시(안 제5조)
 - 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 대한 50% 감면 명시
- 불필요한 규제 사항 삭제(안 제7조제3호, 안 제10조제5호)
 - 기타의 경우 등으로 표현된 불필요한 규제 삭제
- 손해보험 의무가입 및 제출 조항삭제(안 제12조)
 -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 삭제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- 「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4조

○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여, 손해보험 의무가입 및 제출 조항을 삭제하고, 사용료 감면기준을 명시하며, 기준이 모호한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 조례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5조에서 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 대한 사용료 50% 감면을 명시하도록 수정하였고,
-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애매하고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,
-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구미시 구포복지관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조항을 자체 정비하고,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며,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및 감면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.